

제2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19. 2. 21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9년 2월 21일  
전문위원 안 은 희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19 - 8
- 나. 제 안 자 : 황영호 의원 외 12명
- 다. 제안일자 : 2019년 2월 1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13일

## 2. 제안이유

에너지 절약과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강서구, 사업자, 구민의 책무 (안 제3조 ~ 안 제5조)
- 다.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(안 제6조)
- 라.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(안 제7조 ~ 안 제12조)
- 마.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 (안 제13조 ~ 안 제14조)
- 바.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진 (안 제15조)
- 사. 예산 등 지원과 에너지 교육·홍보 (안 제16조 ~ 안 제 17조)
- 아. 표창 및 시행규칙 (안 제18조 ~ 안 제19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에너지법」 제2조, 제4조, 「집단에너지 사업법」 제5조, 「건축법」 제11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, 제32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, 제31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합 의 : 환경과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9. 2 . 1 . ~ 2 . 8 .) 결과 :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본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임.

나. 주요 제정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-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정하고,
- 안 제3조에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에 대한 구와 사업자, 구민의 책무를 정함.
- 안 제6조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에너지 관련 정책 개발, 기본계획 심의, 민·관 협력 방안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,

-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 기존 건축물 및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확대에 관한 사항과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.
- 안 제16조에서 에너지 절약과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
- 안 제17조에서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, 홍보물품 배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,
-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에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#### 다. 종합의견

- 매장량의 한계, 환경 오염 등 화석에너지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, 정부에서도 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<sup>1)</sup>”을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우리구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,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,

---

1) 2017년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”은,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%에 불과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 전체 발전량의 20%까지 늘리고, 재생에너지의 발전원을 기존 폐기물·바이오 위주에서 태양광·풍력 중심으로 이동시키며,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임.

- 에너지 관련 기본 조례로서의 제정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, 상위법 위반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**에너지법**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"에너지사용자"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.

7. "에너지공급자"란 에너지를 생산·수입·전환·수송·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,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의 생산·전환·수송·저장·이용 등의 안전성,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.

□ **집단에너지 사업법**

제5조(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(이하 "공급대상지역"이라 한다)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
2.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
3.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## □ 건축법

제11조(건축허가)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.

제32조(대부료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

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.

**제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**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.